



2024년도 인권의식 실태조사

지침서



CONTENTS

I.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3
2. 법적근거	3
3. 조사연혁	3
4. 조사대상 및 규모	4
5. 조사방법 및 기간	4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4
7. 조사내용	5
8. 조사항목	5
9. 조사체계	6
10. 추진일정	6
II. 현장조사	7
1. 면접원의 기본자세	9
2. 면접원의 역할	11
3. 가구관리 요령	13
4. 현장조사 요령	21
III. 조사표 작성 요령	33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35
2. 조사항목별 작성 요령	37

부록. 표준직업분류표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및 규모
5. 조사방법 및 기간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7. 조사내용
8. 조사항목
9. 조사체계
10. 추진일정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전국 단위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인권상황과 시계열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국가인권통계 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 조사실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제1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조사연혁

- 2019: 최초 조사(표본조사, 승인통계)
- 2020: 제2차 조사(표본조사, 승인통계)
- 2021: 제3차 조사(표본조사, 승인통계)
- 2022: 제4차 조사(표본조사, 승인통계)
- 2023: 제5차 조사(표본조사, 승인통계)

4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
- 조사규모: 전국 9,000가구 내외(900개 조사구)

5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면접조사 및 온라인조사(필요시 자기기입식 병행)
- 기준시점: 2024. 7. 1. 0시
- 조사기간: 2024. 7. ~ 9.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 목표모집단 : 조사기간 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
- 조사모집단 :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제외 일반가구 만 18세 이상 가구원
- 표본추출틀 : 2022년 통계청 등록센서스 조사구 리스트 지역 조사구
 - 섬, 과소조사구(20가구 미만) 및 18세 이상 인구가 없는 조사구 제외
- 층화 : 시/도(17개 권역), 동부/읍면부, 조사구 특성
- 표본추출방법 : 과대추출방법(Over-sampling) 적용
 - 현장 대체에 따른 비표본오차 축소를 위하여 과대추출방법 적용
 - 무응답 발생 시 표본가구는 대체하지 않고 가중값 조정
 - 조사구당 목표 표본가구수: 10가구
- 표본조사구 배분 :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 가구 수 기준 제곱근 비례배분

7 조사내용

○ 인권인식,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정책대응 등 종합적인 실태 파악

조사대상	조사내용
가구대표	• 가구원 명부(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파악) • 주택특성, 경제상태 등 가계 특성
만18세 이상 가구원 (가구대표 포함)	• 개인 속성(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 • 인권인식, 인권 침해와 차별 인식 및 피해경험 • 인권관련 의견, 인권교육 및 개선에 대한 인식

8 조사항목

○ 가구주 응답항목과 공통항목으로 구성

영역	항목
가구사항	가구원명부(가족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I. 인권인식	①인권인지 ②헌법 인권보호 인지 ③우리나라 인권 상황 ④우리나라 전반 인권 존중 정도 ⑤각 집단의 인권 존중 정도 ⑥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⑦인권 관련 의견 ⑧인권의 사회적 효능감 ⑨우리사회의 권리 ⑩생애주기별 중요한 권리
II. 인권침해와 차별	⑪인권침해/차별대상 ⑫인권침해/차별 발생이 쉬운 상황 ⑬인권침해 정도 ⑭공공기관 인권침해 ⑮인권침해 경험 ⑯인권침해경험 피해 ⑰차별 정도 ⑱차별 경험 및 차별 유형 ⑲차별경험 피해 ⑳인권침해/차별 사람 또는 상황
III. 인권관련의견	㉑시민/정치적권리 의견 ㉒학생인권조례 관련 의견 ㉓기후인권 ㉔정보인권 ㉕아동청소년의견 ㉖아동학대 인식 ㉗노인학대 인식 ㉘취약계층 주변인 유무 ㉙취약계층 사회지도층 동의 ㉚혐오표현 경험 ㉛혐오표현 심각성 ㉜혐오표현 법적규제
IV. 인권교육 및 개선	㉝인권존중 행동규범 인지 ㉞인권침해 차별대응 ㉟인권교육참여 ㊱인권교육 필요성 ㊲인권교육 강화필요대상 ㊳인권교육 주제내용 ㊴인권침해/차별 해소 참여 ㊵인권보호/신장 방법 ㊶정부에대한의견 ㊷인권침해/차별해소 주도
VI. 개인 및 가구 관련 사항	배문1)혼인상태 배문2)교육정도 배문3)종교 배문4)취업여부 배문5)국가목표 배문6)삶의 만족도 배문7)공동체 이익 배문8)정치적성향 배문9)집 종류 배문10)가구소득

※ 가구사항의 배문9), 배문10) 항목은 가구주만 응답

9 조사체계

담당 역할	기관명
작성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획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한국리서치
자료처리	한국리서치
결과분석 및 공표	국가인권위원회

10 추진일정

(1) 조사준비

- 조사항목 및 조사표(안) 작성 2024. 5
- 표본 설계 의뢰 2024. 5
- 통계조사 승인신청 2024. 5
- 지침서 작성 2024. 5
- 조사인력 채용 2024. 6
- 조사표 인쇄 및 조사용품 제작 2024. 6

(2) 조사

- 면접원 교육 2024. 7. 2. ~ 7. 4.
- 본조사 실시 2024. 7. ~ 2024. 9.

(3) 데이터 처리

- 조사결과 집계 및 클리닝 2024. 9

현장조사

1. 면접원의 기본자세
2. 면접원의 역할
3. 가구관리 요령
4. 현장조사 요령

II. 현장조사

1 면접원의 기본자세

가. 면접원의 마음가짐

- 면접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조사회사의 대표자로서 공손하고, 유쾌하며 자신감 있게 조사에 임하도록 한다.
- 조사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응답자에게 그들의 참여가 가치있고 필수적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나. 면접원의 태도

- 단정한 복장과 겸손한 태도로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조사지침을 반드시 숙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응답자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
- 면접과정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응답을 유도하거나 상식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사례는 조사표에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반드시 수퍼바이저나 담당 직원과 상의한 후 기입하도록 한다.

다. 면접원의 의무

-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지침서 등을 미리 숙지하고, 조사에 임할 때는 면접원증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하며, 반드시 조사요령 교육을 받은 사람이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통계법 제39조)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④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 받은 자
- ⑤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 조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데이터를 전송해서는 절대 안 된다.

- 검증과정을 통해 밝혀질 경우 해당 면접원의 설문지는 전량 폐기되고, 폐기된 설문지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음

- 슈퍼바이저의 지시에 따라 조사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종료된 설문은 바로 전송하여 담당 리뷰어가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슈퍼바이저에게 알려야 한다.

2 면접원의 역할

가. 면접원

- 조사표, 조사구 요도 및 명부, 태블릿 PC 등 조사용품을 수령·관리한다.

조사용품

- | | | | |
|-------------------------------------|------------|----------------|--------------|
| - 조사표 | - 태블릿 PC | - 조사지침서 | - 조사구요도 및 명부 |
| - 연락전(부재중 알림) | - 조사안내문 | - 조사답례품 및 지급명부 | - 비밀보호용 봉투 |
| - 면접원증 | - 필기도구, 파일 | | |
| - 안전용품(휴대용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마스크, 손소독제) | | | |

- 접촉일지에 매일 조사 진행상황을 기입한다.
- 각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를 완성한다.
- 온라인조사를 희망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핸드폰 번호를 받은 후 문자로 설문을 발송하거나 QR코드와 가구원별 설문 참여 코드를 전달한다.
- 조사가 종료되면 추후 보완 및 확인을 위해 응답자 연락처를 확인한 후 조사답례품을 지급하고 「조사답례품 지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서명을 받는다.

※ 온라인조사의 경우 설문을 끝까지 진행한 후 답례품 지급 번호란에 모바일 상품권을 수령할 연락처를 입력하면 본사에서 발송할 예정임. 이 사항에 대해 응답자에게 안내필요

나. 슈퍼바이저

- 조사관련 용품 관리 및 배부

- 조사용품을 수령한 후 면접원에게 배부한다.

- 면접원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지도

- 담당 면접원별 조사 진척률을 파악하고 조사부진 조사구를 독려한다.
- TAPI 매니저의 면접원별 진행상황표를 통해 면접원의 활동상황을 점검한다.
- 중도 포기 면접원에 대해서는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대체하고, 방치된 조사구가 있는지 수시로 파악한다.
- 교육받은 면접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다른 사람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연구원에게 즉시 보고 후 조치한다.
- 조사기간 중 면접원이 조사에 전념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한다.
- 면접원의 질의 중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당연구원과 협의하여 답변하고, 문제점은 수시로 담당연구원에게 보고 후 조치한다.
-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가구를 매일 파악하여 면접원과 함께 방문하여 설득하고, 담당연구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대응지침을 받는다.

○ 온라인조사 관리

- TAPI 매니저의 조사방법별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온라인조사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전달사항 전달

- 조사 내용 리뷰 후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면접원에게 보완토록 지도한다.
- 수시로 전달되는 조사내용 관련 지침을 면접원에게 전달한다.

○ 가구명부 및 조사구명부 관리

- TAPI 매니저 상에서 원가구 성공률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한다.
- 매니저로 대체조사구를 관리하고, 면접원에게 대체 조사구를 제공한다.

○ 조사답례품 관리

- 조사답례품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 온라인조사의 경우 조사 완료된 가구원에 대한 모바일 상품권 지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 조사완료 후 조사표의 사후검증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다. 리뷰어

-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면접원에게 수정 지침을 내린다.

3 가구관리 요령

가.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1) 조사구

- 조사대상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계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전체 단위 또는 지역을 행정 읍, 면, 동별로 일정한 기준이 되는 수 또는 면적에 근사하게 적당히 구획한 구역단위를 말한다.

조사구의 종류

• 아파트조사구(특성부호 A) : 조사 대상

「일반가구」와「비혈연자 6인 이상 19인 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1개 동(棟) 또는 2개 동(棟) 이상의 총 호수(戶數)가 200이상이 될 때 설정하는 조사구

- 주상복합아파트, 독신자아파트(사원, 공무원아파트 등) 등도 주택의 종류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 조사구로 설정
-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빌라, 맨션 등)은 보통 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

• 보통조사구(특성부호 1) : 조사 대상

「일반가구」와「비혈연자 6인 이상 19인 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주요 지형지물(도로, 하천 등) 또는 행정 통·리 경계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조사구

- 오피스텔, 가족이 거주하는 사원주택 등은 보통 조사구로 설정
- 고시원, 고시텔, 리빙텔, 레지던스와 같은 건물의 경우 공통 또는 개별취사여부 등에 관계 없이 '보통 조사구'로 설정

- 조사구번호는 총 11자리(1212312123-A)로 되어 있는데 앞 2자리는 시·도, 다음 3자리는 시·군·구, 다음 2자리는 동·읍·면, 다음 3자리는 동·읍·면 내에서 분할된 조사구 일련번호, 마지막 1자리는 조사구 특성(아파트조사구, 보통조사구 등)을 나타낸다.

1	2	1	2	3	1	2	1	2	3	-	A 또는 1
시·도 코드		시·군·구 코드			동·읍·면 코드		조사구 일련번호				조사구 특성

- 조사구요도란 조사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도상에 설정한 조사구 경계, 지형지물과 그 명칭, 거처번호 등을 일정한 규격에 따라 표기한 약식지도를 말한다.

(2) 거처

- 거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를 의미한다. 크게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구분한다.
- 거처번호는 3자리로 되어 있으며 거처마다 1개의 번호를 부여하고, 조사구가 바뀌면 '001'번부터 다시 시작한다.
- 거처 유형

유 형		내 용
주 택	단 독 주 택	일반 - 통상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다가구 -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소유권은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으나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의미
		영업 겸용 -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 ※ 주거 부분보다 영업용 부분의 연면적이 더 많은 경우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아파트	-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았으면 아파트로 본다.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다세대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름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비거주용 건물 내에 사람이 살되,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 - 상가, 학원 등 영업을 목적으로 지은 집이지만 살림하는 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임
	오피스텔	-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의 요건(영구성)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

(3) 가구

-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한다.

가구와 혼돈하기 쉬운 개념

-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르다.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나, 가구는 혈연 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이다.

- 가구번호는 3자리로 되어 있으며 가구마다 1개의 번호를 부여하며, 거처가 바뀌면 '001'번부터 다시 시작한다.

○ 가구 유형

유 형	내 용	대상적격여부
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적 격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적 격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적 격
	1인 가구	적 격
집단가구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	적 격
	가족이 아닌 20인 이상의 가구(집단시설 가구)	부 적 격
외국인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적 격

○ 가구 수 구분

-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1가구로 조사한다.
 - 부모, 자녀, 친척 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5인 이하의 하숙생, 가사 사용인(가사도우미, 운전사 등) 또는 종업원으로 구성된 경우
- 취사,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조사한다.
 - 친척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
 -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하숙생, 가사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6인 이상 19인 이하인 경우
 - 주인가구와 숙식을 달리하는 자취생의 경우

(4) 가구원

- 가구원은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제외된다.
 - 가족이라도 군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포함된다.
 - 먼 친척, 친구,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된다.
 -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최근 3개월 이상 되었고 조사당시에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된다.
- 조사대상 가구원은
 - 현재 혈연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이 가구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 **만 18세이상인 가구원(2006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이다.
- 조사기간 중 대상가구에 전출·입 가구원이 있을 경우, 조사표 배부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배부일 전 전입한 가구원은 조사하고, 전출한 가구원은 조사하지 않는다.
 - 배부일 후 전출·입한 가구원은 모두 조사하지 않는다.
- 가구원번호는 2자리로 되어 있으며 가구원마다 1개의 번호를 부여하고, 가구가 바뀌면 '01'번부터 다시 시작한다.

〈가구원 여부〉

포함	제외
1. 출장이나 여행으로 잠시 집을 떠나 있는 가구원 2. 잠시 친척집에 가 있는 가구원 3. 일반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및 보호자인 가구원(기간 불문) 4. 3개월 미만 거주 예정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가구원	1. 취업, 취학 등으로 외지에서 하숙,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있는 가구원 2.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모자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가구원 3. 선박, 항공기, 철도 등의 승무원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원 4. 군대, 의무경찰에 입대한 가구원 5.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정착여부를 알 수 없는 집을 떠난 지 1개월이 넘는 가구원

나. 가구 선정 및 대체 요령

(1) 조사가구 선정 및 대체

- 가구명부에 표시된대로 ‘원’으로 표시된 10가구가 조사대상가구, 이후 25가구는 예비가구이다.
- 원가구 10가구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나, 원가구 대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가구 중 순차적으로 대체한다.

조사대상가구 선정 시 유의사항

- 가구명부상 존재하지 않는 가구는 모두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가구명부상 존재하지만 전입전출로 가구가 변경된 경우는 조사대상이 된다.

예) 새로운 거처가 지어진 경우: 조사제외
전입으로 가구가 증가한 경우: 조사제외

○ 조사대상가구 대체요령원칙

- 10가구 이내에서 불응·불능·빈집으로 인해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 수퍼바이저에게 보고 후 담당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예비가구를 순차적으로 조사 실시한다.
 - 불응 또는 불능가구가 발생한 경우 실제조사의 진행순서에 따라 가구를 대체한다.
- 예) 조사 첫날 5번째 가구가 불응가구, 9번째 가구가 불능인 경우 대체방법
- 응답거부 가구인 5번째 가구는 최소한 4번 이상 방문하여야 하므로, 9번째 가구를 먼저 예비가구 1번으로 대체하고, 5번째 조사거부 가구 불응 확정 시 그 다음 예비가구 순으로 가구를 대체함

가구 대체 사유

- 4회 이상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불응하여 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 단순불응 가구는 최대한 설득하여 조사
- 전출이 발생하고 전입 온 가구가 없는 경우
 - ※ 조사대상기간에 전출하는 가구는 전출 전에 조사하는 것이 원칙
- 장기부재로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 가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응답을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큰 개념의 질병, 신체적 장애 등)가 발생한 경우
- 해당 가구에 조사대상자가 없는 경우(18세 미만의 가구원만 거주)

〈조사 사례별 조사대상가구〉

〈사례1〉

일련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조사 여부	비 고
15	015	001	조사	본 조사 가구
16	016	001	조사	
17	017	001	조사	
18	017	002	조사	
19	018	001	조사	
20	019	001	조사	
21	020	001	조사	
22	021	001	조사	
23	022	001	조사	
24	022	002	조사	
25	023	001	-	예 비 가 구
26	024	001	-	
27	025	001	-	
28	026	001	-	
29	027	001	-	
30	028	001	-	
31	029	001	-	
32	030	002	-	
33	031	003	-	
34	032	004	-	
35	033	001	-	
36	034	001	-	
37	035	001	-	
38	036	002	-	
39	037	001	-	

〈사례2〉

일련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조사 여부	비 고
15	015	001	조사	본 조사 가구
16	016	001	조사	
17	017	001	조사	
18	017	002	조사	
19	018	001	조사	
20	019	001	빈집	
21	020	001	조사	
22	021	001	조사	
23	022	001	불능	
24	022	002	불능	
25	023	001	불응	예 비 가 구
26	024	001	불능	
27	025	001	빈집	
28	026	001	대체1	
29	027	001	빈집	
30	028	001	불능	
31	029	001	대체2	
32	030	002	불응	
33	031	003	불능	
34	032	004	대체3	
35	033	001	-	
36	034	001	-	
37	035	001	-	
38	036	002	-	
39	037	001	-	

구 분	조사가구	불응가구	불능및빈집	대체가구	비고
사례1	10	0	0	-	
사례2	10	0	2	3	

다. 가구 접촉일지 작성

- 접촉일지는 조사가구를 대체하는 기준이 되며, 대체 시 빈집 등 특이사항이 없는 한 4회차 이상을 방문하여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횟수, 시간, 결과, 기타사유 등은 결과 분석을 위하여 상세히 기입한다.
 - 방문횟수 : 접촉일지를 기록하는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데이터 히스토리로 보여져 전체 방문 횟수로 자동 카운트 된다.
 - 방문일 및 방문시간 : 접촉일지 기록 시, 해당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 방문결과 코드 :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 결과를 코드로 기록한다.
- 비고 : 가구대체 시 대체번호, 기타사유에 대한 상세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 외국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통역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불가능 한 경우 '49. 기타(의사소통 불가능 외국인)'로 처리한다.

〈방문결과 코드〉

결과	코드	내 용
완료	11	조사 시작
진행중	22	부재 중(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방문전 불임 등)
	23	재방문 요청
불응	31	사생활 노출 기피
	32	가정 사정(실업, 이혼 등)
	33	바쁘거나 귀찮아서
	34	정부 불신
	39	기타()
불능	41	장기 출타
	42	장애, 사고, 질병(자가격리포함)
	43	고령(가구주 인지적 장애)
	44	빈집
	49	기타()

라. 조사구 대체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사구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구는 조사하지 말고 실사 수퍼바이저에게 보고 후 새로운 대체조사구로 배부 받아 조사 진행한다.
 - 조사구 내 가구가 이미 철거 또는 철거 중인 조사구
 - 조사구 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조사구 내 전체 적격 가구가 35가구 미만인 경우
 -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4 현장조사 요령

〈조사 주제를 고려한 강조 사항〉

- ▶ 인권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심한 주의와 조심이 필요한 조사임. 따라서 다른 주제의 조사보다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잘 숙지해야 함
- ▶ 설문지에 쓰여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주고, 면접원이 설명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음. 면접원이 설명하는 용어나 표현 속에 가치판단이 포함될 수 있고, 편향성이 드러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임
- ▶ 해당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가 잘 알지 못하거나 응답을 유보하는 것도 유용한 정보일 수 있으므로 모르는 것을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여기지 않도록 함
- ▶ 면접원의 얼굴 표정, 몸짓, 태도 등이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조심하라는 원칙이 이번 조사에서 더욱 중요함. 특히 인권침해, 차별 피해의 경험을 묻는 질문은 매우 민감하므로 면접원이 어떠한 반응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함
- ▶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혀 다른 기관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 위치해 있으며, 인권 전담 독립 기관으로서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임
- ▶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에 위치해 있으며 국무총리 산하 기관임.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임

가. 면접조사 요령

(1) 가구를 방문하기 전

- 조사표의 구성 및 순서, 항목별 지침을 충분히 숙지한다.
- 조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한다.
 - 면접원증, 조사구역도, 조사표, 태블릿 PC, 조사지침서, 조사 안내문, 비밀보호용 봉투, 조사답례품 및 지급명부, 사무용품, 방문안내장 등
- 조사표를 스스로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있을 때에는 비밀보호용 봉투를 같이 배부한다.

(2) 가구를 방문할 때

- 개인위생 관리 :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소독을 철저히 한다.
-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올바른 언행으로 응답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며, 조사 수행 중에는 항상 면접원 신분증이 잘 보이도록 패용한다.
-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 지역과 조사구 특성에 따라 가구방문 시간대를 정하며, 가구와 약속한 방문일자와 시간은 반드시 준수한다.
 -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시간은 가급적 피하고 가능한 낮시간에 완료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방문한다.
 - 조사구에 상가지역이 있으면 혼잡한 시간은 피해서 방문한다.
 - 아파트, 연립 등의 조사 시에는 관리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 대문이나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 방문한 시간이 식사시간이나 응답하기 곤란할 때에는 다른 가구부터 조사할 수도 있다.
 - 이렇게 저녁식사 하시는데(또는 다른 이유를 들고)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다른 가구를 조사하고 나서 한 20분 후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 조사와 관련이 없는 말은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조사시작 전에는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상대방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끈다.
 - 집안이 참 깔끔하시네요, 집안일은 해도 표시가 안나는 일인데 부지런하신가 봐요.
 - 아이가 참 귀엽네요! 저도 이만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애가 몇 살인가요?

(3) 가구원을 만났을 때

- **조사안내문 제시** : 어디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먼저 밝히고, 조사의 목적과 조사된 자료가 추후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응답자가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응답자가 답변을 거부할 경우** : 면접원의 태도가 중요하므로 불쾌한 말을 듣더라도 침착하고 겸손해야 한다.
 - 응답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불신하는 이유나 응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난 후,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최선을 다하여 응답자를 설득하였지만 계속 응답거부를 할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일단 물러나야 하며 슈퍼바이저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 **비밀보호 강조** : 이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법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 **공손한 태도와 언어의 사용** : 존댓말을 사용하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야 하며, 너무 빨리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가급적 또박또박 천천히 말한다.
 - 면접 중에 응답자가 얘기를 할 때 “예, 그렇군요.”, “그럴 땐 힘드셨겠어요” 등의 추임새로 공감 표시를 한다.
 - 응답자의 응답을 보았을 때, 질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의미 전달이 안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단 응답을 받아들인 후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대답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양해를 구한 후 재 질문한다.
 - 응답자의 대답을 되풀이하여 얘기를 해 주고, 대답이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을 때에는 한 번 더 질문하여 명확한 답을 하도록 한다.
 - 질문을 할 때와 답변을 들 때는 응답자와 시선을 마주치도록 노력한다.
 - ※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응답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진지하게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 이웃이나 다른 가구원이 있는 곳에서 조사하는 것은 피하며, 조사에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문** : 인권침해·차별 경험, 소득,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모든 질문을 할 때에 같은 어조로 물어 응답자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한다.
 - 응답자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하여 정확한 응답이 나오도록 한다.
 - 응답내용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들리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응답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할 수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시간을 두고 보완하도록 요청한 뒤에 조사표를 회수할 재방문 일시를 약속한다.
- **마무리** : 면접이 종료되면 ①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②기입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작성되었는지, ③항목 간에 상충된 내용은 없는지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재확인 한다.
 - 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응답자가 좀 망설이면서 답변했거나 확실치 못한 추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혹시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해 둔다.
-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회수할 경우에는 약속 시간을 미리 정하고 반드시 약속된 시간에 방문 회수하며, 회수 즉시 조사표 완성 여부를 확인한다.
- 자기기입식 응답자는 익명성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많으므로 비밀보호용 봉투의 필요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배부한다.
- 응답자에게 조사답례품을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작성한다.
- 조사가 끝났더라도 끝까지 친절な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되며, 정중하게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한다.

나. 온라인조사

○ 온라인조사 참여여부 파악

- 면접원은 가구방문 시 온라인조사 참여 희망여부를 파악한다.
- 특히 일과시간 동안 면접이 어려운 가구원, 조사내용의 비밀보호(예:차별경험 등)가 필요하거나 사생활 노출을 꺼려하는 응답자에 대해 온라인조사로 정확한 응답을 유도한다.
- 가구 사항과 가구원 명부 작성은 면접원이 직접 진행하고 이후 설문 파트만 온라인조사로 진행한다.

○ 온라인조사 참여 안내

- 온라인조사는 문자 발송과 QR코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① 조사 링크 직접 문자 발송

- 온라인조사를 희망하는 가구원에게 조사 문자 발송을 위한 핸드폰 번호를 확인한다.
- TAPI 인터뷰어에서 해당 가구원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후 문자 ‘발송’ 버튼을 눌러 바로 응답자에게 조사 링크가 발송되도록 한다.

② QR코드와 가구원 참여번호 전달

- 조사 팸플렛 가장 뒷면에 위치한 QR코드와 가구원 참여번호표를 보여주며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 가구원 명부 작성 후 QR코드를 통한 온라인조사를 희망하는 가구원 번호를 조사 팸플렛의 참여번호표에 기록하고 전달한다.
- 응답자가 가구원 참여번호 입력 시 실수를 줄이도록 같은 가구 내 참여번호 앞 일곱 자리는 고정이며, 뒤의 두 자리만 가구원에 따라 변동함을 안내한다.

예시 : 9999 조사구의 031 가구의 03번 가구원이 온라인조사 희망 시 아래와 같이 적음

9	9	9	9	-	0	3	1	-	0	3
---	---	---	---	---	---	---	---	---	---	---

○ 온라인조사 참여 방법

① 조사 링크 직접 문자 발송

- 문자로 받은 개인별 조사 참여 링크를 누르면 바로 조사 참여하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야 한다.

② QR코드와 가구원 참여번호 전달

- QR코드를 스캔하여 웹링크에 접속한 후 가구원별로 생성된 참여번호를 입력하여 조사 참여한다.

○ 온라인조사 참여 모니터링

- 온라인조사를 요청한 해당 가구원이 인터넷으로 조사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한다.

- 온라인조사 대상 가구원이 조사 기간 내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구원 접촉일지의 컨택결과를 수정하고 면접원이 다시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다. 조사답례품 지급

○ 조사답례품은 상품권으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므로 철저히 관리한다.

○ 조사된 가구의 가구주에게 10,000원(5,000원 상품권 2매)을 지급하고, 가구주를 제외한 조사대상 가구원 수만큼 5,000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

※ 3명 조사 완료된 가구의 경우 20,000원 지급((가구주(5,000×2매)+가구원 2명(5,000×2매))

- 조사표 작성을 완료하고 기입내용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한다.

- 조사답례품 지급대장에 정자로 지급 내역을 기재하고, 수정 시에는 적색으로 사선을 그은 후 기재한다.

-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 반드시 회수하여 정산내역과 배부·지급·잔량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 협조응 조사답례품은 조사구당 5,000원 권 1매를 제공하며, 조사에 협조를 해줄 만한 자에게 지급한다.

- 지급대장에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예: OO통장, 반장, 아파트관리소 등)

- 사용하지 않은 협조응 통계조사답례품은 반납 처리한다.

라.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면접원의 통계조사 협조요청이나 설득 등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장기부재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불응(조사거부)

- 면접원은 조사대상 가구를 반드시 주중, 주말 및 시간대별 4회 이상 방문하고, 그래도 응답을 거부할 경우 수퍼바이저 또는 담당 연구원이 동행하여 설득한다.
 - 통계조사응답은 국민의 사회적 책임이자 권리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 통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웃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 비밀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보호용 봉투에 조사표와 기입요령을 넣어 배부 및 회수(비밀보호용 봉투 뒷면에 면접원 이름, 연락처를 기입하여 배부)한다.
-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응 가구가 발생하는 경우,
 - 면접원은 지체 없이 수퍼바이저나 담당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 이를 통보받은 수퍼바이저나 담당연구원은 사실 여부 확인 후 표본가구를 대체해야 한다.

(2) 불능(장기출타, 빈집 등)

- 장기출타(출장, 취업, 교육 등), 입원, 장애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가구원 모두 부재중인 경우에는 옆집이나 이웃 등에게 수소문 하여 확인하고, 주중, 주말 및 시간대별 4회 이상 방문하여도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출타로 처리하며 해당 거주지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빈집으로 처리한다.
 - 응답자가 몸이 불편하여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장애, 사고, 질병으로 처리한다.
 - 1인가구의 경우 응답자가 인지적 장애로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고령으로 처리한다.

마. 현장조사 안전수칙

면접원은 조사구를 돌아다니며 가구에 방문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는데 조사를 사고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안전한 조사활동을 위한 기본사항

- **안전용품 준비:** 항상 안전용품(경보기, 스프레이 등)을 휴대하여 위험에 대비한다.
 - 조사기간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수시로 손소독을 실시한다.
- **담당조사구 확인:** 조사구의 지형, 주택배치, 개를 기르는지 여부, 교통량, 경찰 지구대·파출소 등 조사담당지역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한다.
- **비상연락처 확보:** 조사 중 긴급한 상황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처(사무실, 인근지구대)를 메모하고 필요시 즉시 연락한다.
- **본인 일정 공유:** 조사 당일의 방문 예정지를 가족 및 지인, 수퍼바이저 등에게 알리고, 조사 도중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반드시 알린다.
 - 수퍼바이저는 담당 면접원의 당일 조사일정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부득이 야간에 조사해야 할 경우는** 면접원 2인이 함께 다니거나 가족, 친지 등과 연락하여 동행하도록 한다. 가족이나 친지와 동행할 경우 조사현장에서는 응답내용이 들리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조사활동에** 적당한 의상과 신발을 착용하고,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의상, 지나친 화장, 종교·사회단체 배지 부착 등은 피하도록 한다.
- **사고나 부상 시** 긴급구조 요청 후 즉시 가족과 수퍼바이저에게 연락하고 수퍼바이저는 담당연구원에게 알린다.

(2) 안전사고 예방법

○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사고

- 도로의 높낮이, 구덩이, 하수구에 주의한다.
- 철제계단 등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주의하며, 비가 올 때나 야간에는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 젖은 평지 등에서도 조심하도록 한다.

○ 개 물림 사고

- 개를 기르든지, 줄에 연결되어 있는지, 줄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나서 방문한다.
- 작은 개라도 본능적으로 무는 습성이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접촉하지 않는다.

○ 교통사고

- 자전거 사용 시 몸에 잘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자전거의 운전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저녁이나 야간조사는 특히 주의한다.
- 비오는 날에는 자전거 및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며, 차량은 주변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 조사관련 서류 분실 사고

- 조사관련 서류(조사표, 조사구역도, 조사구 명부 등)를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휴대하고, 특히 조사 완료된 조사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날치기에 주의한다.

○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 가구는 가능한 밝을 때 방문한다.
- 부득이 야간 조사 시 동료 등 동행자와 함께 수행한다.
- 조사 중 불안감을 느낀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조사를 멈추고 되돌아가야 한다.
- 항상 안전용품(호신용 경보기, 스프레이 등)을 휴대하여 위험 시 활용한다.

〈가구방문 안전수칙〉

- ▶ 조사는 낮에, 적절한 방문 시간 선택
- ▶ 조사는 현관에서
- ▶ 면접원증 제시
- ▶ 예의바른 태도
- ▶ 공동주택 조사 시 관리인에게 알림
- ▶ 위험 발생 시 큰 소리로 도움 요청
- ▶ 조사 중 영업행위나 종교 활동 금지



안전사고 발생시

1. 사고가 일어나면, 신속히 연락

- 만일 사고로 부상이 생긴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신속히 지방청 본부 또는 사무소에 연락해야 하고, 연락 시 부상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부상의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2. 긴급시 연락처 ※ 한국리서치 자료조사부 : 02-3014-0132

- 긴급 전화번호(국번없이 전국 동일)
 - 코로나 19 의심 및 응급 의료상담 : ☎ 1339
 - 범죄 신고 : ☎ 112
 - 긴급재난·구급차 : ☎ 119
 - 여성긴급전화 : ☎ 1366
 - 182 경찰민원 콜센터 : ☎ 182

※ 감염병 관련 상담 콜센터

2018.08.03

 질병관리본부
KCDC

꼭, 기억해줘!

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7/7

바. 예상 질문별, 거절 상황별 대처 방안

(1) ‘인권익식실태조사’는 무엇입니까?

-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거나 경험한 인권과 관련된 생각과 평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 경험을 파악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2) 어디서 조사합니까?

-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바쁘는데 꼭 참여해야 합니까?

- 귀 닻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선생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응답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응답하여 조사결과가 부정확하면, 이를 근거하여 추진한 정부정책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법(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통계응답자의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 응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쁘셔서 응답하기 어려우시면 편리한 시간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4) 왜 내가 조사대상으로 뽑혔는지요?

-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표할 수 있는 일부 가구를 표본으로 뽑아 조사합니다.
- 조사대상 가구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데, 핵심은 모든 가구가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동일하도록 설계된 통계기법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전체 가구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 조사 내용은 엄격하게 법으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에게 누설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통계법 제33조)
- 조사된 내용은 전산 처리되어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름을 작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사내용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락하기 위해서입니다.

(6) 조사된 자료가 과세자료 등 여타의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나요?

- 모든 통계조사 자료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과세자료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통계법 제33조)
- 위 사항을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통계법 제39조)

(7)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다.

(8) 한국리서치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한국리서치는 마케팅 및 여론조사 전문회사입니다. 정부관련 기관에서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여론의 생각을 수집하거나 기업에서 판매를 위한 소비자의 생각을 수집하는 일을 합니다.

(9) 누가 조사를 하나요?

- 현장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면접 등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채용하여 교육시킨 면접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10) 꼭 조사 대상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이 응답해야 하나요?

- 가구 내 다양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응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의 편의에 의한 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조사대상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방문한 가구에 있는 사람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특성이 유사한 사람들만 조사되어(예: 여성, 가정주부, 고령자 등 집에 가장 많이 상주하는 사람)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없게 됩니다.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2.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Ⅲ.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조사표 작성 시

- 가구명부의 가구번호, 가구주 성명, 조사대상가구원 수를 확인한다.
- 조사표 표지의 조사구번호, 거처 및 가구번호 등 기본 사항을 사전에 기입한다.
- 모든 가구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가구주 조사표 표지의 전체 가구원, 대상가구원, 비대상 가구원, 대상 가구원 중 조사된 가구원, 불응·불능 가구원 등을 기입한다.
 - 조사표 표지 사항 중 면접원 사항 및 조사대상 사항은 **가구주 응답자 조사표에만** 기입한다.
- 응답자에게 조사내용(설문문항 등)을 설명하면서 면접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 보기항목이 많은 문항의 경우 응답자가 모든 보기 항목을 듣지 않은 채 성급히 대답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듣고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은 ‘개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조사대상 가구원 본인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
 - 본 조사는 개인의 주관적 의식상태를 조사하는 항목이 많으므로 어느 특정 가구원이 대신하여 응답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한다.
 - 자기기입식 조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표 기입요령을 충분히 설명한다.

비밀보호용 봉투 사용¹⁾

-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할 경우, 면접원 이외 사람에게 조사표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표와 함께 배부하고 봉투에는 면접원의 연락처를 적어준다.
- 약속한 날짜에 회수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보호용 봉투는 담당연구원, 수퍼바이저, 면접원만 개봉한다.

- 각 항목별로 응답항목에 ○, √를 하거나, ☐ 안에 숫자를 기입한다.
- 응답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된 경우에는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기입하고, 입력시에 정리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 응답자에 따라 해당되지 않은 항목은 사선 처리하고,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기입을 계속 진행한다.
- 조사표 작성 후 현장에서 조사항목의 누락 및 착오 사항 등을 점검한다.
- 조사표는 작성과정이나 작성 후에 타인의 눈에 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관리한다.

1) 비밀보호용 봉투를 사용할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 종이 설문 진행 시

- TAPI 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지참한 종이 설문으로 진행 한다.
- 종이로 진행한 설문은 수거 직후 모두 한국리서치 서울 본사의 편칭 전담팀으로 이관한다.
- 이관된 설문 입력 중에 발견된 조사항목의 누락 및 착오 사항 등을 정확하게 재조사하여 담당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한다.

3) 가구 명부 등 관리 철저

- 가구 명부 및 회수한 조사표는 응답자의 중요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하고, 완료된 조사표는 작성되는 즉시 슈퍼바이저에게 제출하여 내용을 검토 받는다.

2 조사항목별 작성 요령

가. 조사표 표지

- 응답자 이름과 응답자 연락처를 받는다. 연락처는 응답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할 내용이 더 있을 경우에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 주소, 조사구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를 적는다.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주소	_____사도_____시·군·구_____로(길)								
	_____동 _____호 (_____동 _____아파트(APT))								
관리 사항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 조사원 성명 및 조사원ID

담당사무소	
조사원 성명	
조사원 ID	
가구당 조사표 부수	총 ()부 중 ()부 성공
조사표 작성 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③ 인터넷 조사

▶ 조사 실시 전에 담당사무소, 조사원ID, 조사원 성명 등을 미리 기입하여 둔다.

▶ 조사가 완료된 후에 가구당 조사표 부수를 작성한다.

- 총 ()부의 부수는 가구별 '조사된 가구원 수'이다

- '()부'의 부수는 조사표별로 '조사된 가구원 수' 만큼 각각 일련번호를 매긴다.

※ 가구에 총 2부가 조사된 경우

→ 가구주 조사표 : 총 (2)부 중 (1)부

2번가구원 조사표: 총 (2)부 중 (2)부

○ 조사결과표

- 가구 내 '01번가구원'(가구주) 조사표에만 작성하며, 그 외 가구원 조사표에는 작성을 생략한다.

구분	인원(명)
전체 가구원 수	
조사 대상	
조사 완료	
불응, 불능	
비대상 (만 18세 미만)	

- ▶ 전체 가구원수 : 조사기준일에 해당 가구 내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를 기입한다.
 - ※ 전체 가구원수 = 조사대상가구원 + 비대상가구원
- ▶ 조사대상 : 전체 가구원 중 만 18세이상 가구원으로 가구주 조사표의 「가구원명부」 조사대상에 표시한 인원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 ※ 조사대상 가구원 = 완료가구원 + 불응·불능가구원
 - 완료는 조사대상 가구원 중 조사 완료된 가구원수를 기입한다.
 - 불응·불능은 조사대상 가구원 중 불응불능 가구원수를 기입한다.
- ▶ 비대상 : 전체 가구원 중 만 18세미만 가구원으로 「가구주 조사표의 가구원명부」상 비대상에 표시한 인원수를 기입한다.

가구원 명부

1) 가구주와의 관계: ① 본인 ② 배우자(사실혼 포함) ③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
④ 손자손녀(배우자의 손자손녀 포함) ⑤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⑥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⑦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⑧ 기타()

2) 조사 대상 : 만18세 이상(2006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가구원명부는 가구주만 작성하며, 현재 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에 대해 조사한다.

가구원

- 가구원은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되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제외한다.
- 먼 친척, 친구,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한다.
-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최근 3개월 이상 되었고, 조사당시에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된다.
- 가구원명부 포함 여부

포함	제외
1. 출장이나 여행으로 잠시 집을 떠나 있는 가구원 2. 잠시 친척집에 가 있는 가구원 3. 일반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및 보호자인 가구원(기간 불문) 4. 3개월 미만 거주 예정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가구원	1. 취업, 취학 등으로 외지에서 하숙, 자취 하거나 기숙사에 있는 가구원 2.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모자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가구원 3. 선박, 항공기, 철도 등의 승무원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원 4.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정착여부를 알 수 없는 집을 떠난 지 1개월이 넘는 가구원

- 가구주를 가장 먼저 적은 후, 면접조사 순서대로 기입한다.
- 가구원번호 : 가구내 해당 가족구성원별로 부여된 번호로 조사표 표지의 가구원 번호를 기입할 때 이 번호를 기준으로 기입한다.
- 가구주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성별이나 세대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다.
 - 만약 남편과 부인 중 '부인'이 '가구주'인 경우 '남편'은 '배우자'에 해당된다.
 -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기입하되 『⑧ 기타』에 해당할 경우 괄호안에 가구주와의 관계를 기입한다.
- 성별 : 이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조사현장에서 확인하여 체크한다.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양·음력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작성한다.
- 조사대상 여부 :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2006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은 조사대상으로 나머지는 비대상으로 기입한다.
- 조사 여부 : 조사대상 가구원의 조사여부를 체크하고, 불응·불능 시 그 해당 사유를 기입한다.

다. 조사 문항별 작성



I 인권 인식

- 평소에 인권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함
-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문함

1

귀하는 평소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접하십니까?

- | | |
|-------------|--------------|
| ① 거의 매일 접한다 | ② 비교적 자주 접한다 |
| ③ 가끔 접한다 | ④ 거의 접하지 않는다 |

- '인권'이라는 단어/용어 자체를 평소에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 또는 접하지 않는지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응답하도록 한다.

2

귀하는 우리나라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 | |
|--------------|-------------|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다소 알고 있다 |
| ③ 잘 모르고 있다 | ④ 전혀 모르고 있다 |

- 우리나라 헌법에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응답한다.

3

귀하는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많이 좋아지고 있다 | ② 조금 좋아지고 있다 |
| ③ 비슷하다 | ④ 조금 나빠지고 있다 |
| ⑤ 많이 나빠지고 있다 | |

-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1년 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방향(개선 또는 악화)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4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 본인의 인권	①	②	③	④
2)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①	②	③	④

- 응답자 자신, 사회적 약자/소수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한다.
-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인구수가 적거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5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 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 여성	①	②	③	④
2) 아동·청소년	①	②	③	④
3) 청년	①	②	③	④
4) 노인	①	②	③	④
5) 장애인	①	②	③	④
6) 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①	②	③	④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집단(여성,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의 인권이 각각 어느 정도 존중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한다.
 - 아동·청소년: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연령대의 사람
 - 청년: 20대 또는 30대 연령에 있는 사람
 - 노인: 65세 이상의 연령에 있는 사람
 - 결혼이주민: 결혼을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 사람
 - 이주노동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노동하는 사람

6

귀하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①	②	③	④
3)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①	②	③	④

- 좋은 시민이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7

귀하는 인권과 관련된 아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인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2)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 권리란 인간 또는 집단이 어떤 일을 자유롭게 수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
- 공공의 이익이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불특정 다수인들의 이익을 뜻한다. 사익의 반대말.

8

귀하는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
- ②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
- ③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
- ④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2가지를 선택한다.

9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 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 신체의 자유 (불법적인 불심검문, 연행, 구금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①	②	③	④
2) 사상·양심의 자유	①	②	③	④
3) 종교의 자유	①	②	③	④
4)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①	②	③	④
5) 집회·결사의 자유	①	②	③	④
6)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7) 공공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②	③	④
8)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9)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②	③	④

○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응답한다.

-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해서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받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처벌받음. 개인의 신체가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 사상의 자유: 어떤 관점이나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는 자유
- 양심의 자유: 외부의 억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
- 의견제시와 표현의 자유: 사람의 내부의 정신을 외부로 공표하는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외부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
- 공공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처리 받을 권리
-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불평등한 대우 또는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구 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0) 주거권(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①	②	③	④
11) 사회보장권(빈곤 해결, 소득 보장)	①	②	③	④
12)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돌봄, 요양보호, 활동 지원 등)	①	②	③	④
13) 노동권(일할 권리, 공정한 노동조건 보장,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①	②	③	④
14) 건강권(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큰 경제적 부담없이 병원을 이용할 권리)	①	②	③	④
15) 교육권(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16) 안전권(범죄, 폭력,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17) 환경권(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②	③	④
18) 문화권(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①	②	③	④

- 주거권: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 사회보장권: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권리
- 소득보장: 인간으로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 활동지원: 장애로 인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안전권: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환경권: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 문화권: 물질적인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뛰어넘어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9-1

다음 중 지금 귀하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주거권(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 ② 사회보장권(빈곤 해결, 소득 보장)
- ③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돌봄, 요양보호, 활동 지원 등)
- ④ 노동권(일할 권리, 공정한 노동조건 보장,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 ⑤ 건강권(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큰 경제적 부담없이 병원을 이용할 권리)
- ⑥ 교육권(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 ⑦ 안전권(범죄, 폭력,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⑧ 환경권(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⑨ 문화권(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 문항에서 제시한 권리 목록(9가지) 중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3가지를 선택한다.



II 인권침해와 차별

- 인권의 각 항목들이 어느 정도 존중되는지를 평가함
-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는지를 평가함
- 인권침해/차별의 발생가능성과 인권취약집단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주관적으로 평가함
- 응답자 자신의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평가와 경험을 질문함

10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① 여성 | ② 아동/청소년 |
| ③ 노인 | ④ 장애인 |
| ⑤ 한부모가족 | ⑥ 결혼이주민(가족 포함)/이주노동자 |
| ⑦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 | ⑧ 전과자 |
| ⑨ 성소수자 | ⑩ 경제적 빈곤층 |
| ⑪ 병력(질병)이 있는 사람 | ⑫ 비정규직 근로자 |
| ⑬ 기타(적을 것 : _____) | |

○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2가지를 선택한다.

- 아동·청소년: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연령대의 사람
- 결혼이주민: 결혼을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 사람
- 이주노동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노동하는 사람
- 성소수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범성애자, 젠더퀴어, 간성,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며 성정체성, 성별, 신체상 성적 특징 또는 성적 지향 등과 같이 성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 병력: 환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과거의 질병, 손상력, 치료 이력 등의 의학적 기록
- 비정규직 근로자: 자신의 직장에서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과 달리, 고용된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일하는 형태.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간접고용(파견 등) 등의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

11

귀하는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공무원과 업무 처리 할 때
- ②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
- ③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입원 중일 때
- ④ 재판받을 때
- 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 ⑥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 ⑦ 가정에서 생활할 때
- ⑧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생활할 때
- ⑨ 군대 생활할 때
- ⑩ 보호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생활할 때
- ⑪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 ⑫ 직장 생활할 때(구직/취업 포함)
- ⑬ 학교에서 생활할 때(입학 포함)
- ⑭ 인터넷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할 때
- ⑮ 기타(적을 것 : _____)

○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으로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2개의 응답을 체크한다.

- 요양원: 치매,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집안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는 시설
- 장애인시설: 장애인이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장기간 거주, 생활하는 시설

12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다소 심각하다
-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인권침해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응답하도록 한다.

1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 ② 정치적 의사 표현의 제지, 방해, 비난, 처벌 등
- ③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
- ④ 단체 결성이나 가입의 자유 제한
- ⑤ 집회나 시위의 자유 제한
- ⑥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 ⑦ 법집행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차별적 대우
-
- ⑧ 없음

-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만 해당된다. 조사시점에서부터 과거 1년 동안에 있었던 응답자 자신의 경험을 체크한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모두 선택하고, 사례로 든 경험이 단 한 가지도 없으면 ⑧ 없음에 체크한다.

- 공공기관: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부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등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함

1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안전의 위협(질병·감염병 및 자연재해 제외)
- ②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함
- ③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움(소음, 악취, 빛 공해, 일조량, 대기 등)
- ④ 편의 시설 부족 또는 거리가 멀어서 문화예술 시설(영화관, 공연장 등) 이용 못 함
- ⑤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 공개나 모욕적 대우를 받음
-
- ⑧ 없음

- 조사시점에서부터 과거 1년 동안에, 예시로 든 상황을 당한 응답자 자신의 경험을 체크한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모두 선택하고, 사례로 든 경험이 단 한 가지도 없으면 ⑧ 없음에 체크한다.

- ① 질병·감염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소음, 악취, 빛 공해, 대기오염, 미세먼지, 일조 등으로 인해 평상시에 했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창문을 열지 못함, 외출을 못함 등)를 말한다.

빛 공해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과도한 빛이 생기거나, 정해진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개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상태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문화예술시설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점자, 수화통역사 등의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서 또는 주거지 인근에 마땅한 문화예술시설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한 상황 등을 말한다.

※ **13**, **14** 모두 ‘① 없음’ ➡ **16** 로 이동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귀하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신체적 상해 ② 재산/금전상 손해
- ③ 사회적 명예 실추 ④ 정신적/감정적 피해(모욕감, 분노, 울분 등)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
- ⑥ 없었음

- 문13번과 문14번에 연결된 질문이다. 문13번과 문14번에서 단 한번도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 문15번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문16번으로 건너뛰다.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하며, 제시된 보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에 체크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 인권침해를 당했지만 별다른 피해나 불이익이 없었다고 주관적으로 생각되면 ‘① 없었음’에 응답하도록 한다.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차별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하다 또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응답하도록 한다.

17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었다면, 어떤 차별인지 아래의 보기를 참조하여 있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별 유형

- ① 신체적/언어적 폭력 (폭행, 위협, 조롱 등)
- ② 일자리 관련 차별 (채용이나 승진 등)
- ③ 일상적 상황에서의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 ④ 인간관계에서의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등)

구 분	문17-1. 차별 경험		문17-1-1. 차별 유형 (해당사항 모두 선택)			
	없다 (해당 없음)	있다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일상적 상황에 서의 차별	인간관 계에서 의 차별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2)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3) 종교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4) 사상 또는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①	②	①	②	③	④
5) 장애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6)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7)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8)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9)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0)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1) 키, 몸무게, 외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2) 미혼(비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3) 한부모, 미혼(비혼) 모/부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4) 질병 및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5) 출신지역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6)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

‘②
있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 17-1에서 ‘② 있다’에 응답한 경우에만 17-1-1 차별유형을 선택하도록 한다. 조사시점에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기간에 있었던, 응답자 자신의 경험을 체크한다. 차별 경험 유무 및 차별유형, 그리고 차별로 인해 겪은 피해와 불이익을 질문하고 있다.

- 제시된 이유의 조건을 아예 갖고 있지 않으면 ‘① 없다(해당없음)’에 체크한다.

예) 장애인인 아닌 경우 ‘① 없다(해당없음)’에 체크

장애인인 경우 차별경험 여부 ‘① 없다’ 또는 ‘② 있다’에 응답한다.

- 차별을 받는 대표적인 질병 및 병력에는 B형 간염,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한센병 등이 있다.
- 미혼: 현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는 할 수도 있다는 의미
- 비혼: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계속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살겠다는 의미
- 병력: 환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과거의 질병, 손상력, 치료 이력 등의 의학적 이력으로서, 환자 또는 환자의 지인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의미
- 성적 지향: 감정적 또는 성적으로 끌리거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이성인지, 동성인지, 혹은 이성과 동성 모두인지 등을 의미
- 성 정체성: 성 주체성이라고도 하며, 자신의 성별에 대한 자각 또는 자아의식을 말한다. 즉 생물학적 성과 동일하게 성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성 정체성을 갖는 사람도 있다.

○ 문17-1번에서 차별의 경험이 단 한 개라도 '② 있다'에 응답한 경우, 문17-1-1에서 차별의 유형이 어떤 것이었는지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한다.

- 신체적/언어적 폭력: 폭행, 위협, 놀림, 조롱, 폭언, 인격적 모욕, 무시 등
- 일자리 관련 차별: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정년, 퇴직, 해고 등의 불이익
- 일상적 상황에서의 차별: 재화(물건), 용역(서비스), 교통수단, 상업시설(음식점, 카페 등),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거절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함
- 인간관계에서의 차별: 결혼, 친구 관계의 회피, 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

※ **17-1** 1) ~ 16) 모두 ‘① 없다’ → **19** 으로 이동

18

- ① 신체적 상해 ② 재산/금전상 손해
- ③ 사회적 명예 실추 ④ 정신적/감정적 피해(모욕감, 분노, 울분 등)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
- ⑥ 없었음

- 문17번에 연결된 질문으로 문17-1-1번에서 단 한번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 문18번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문19번으로 건너뛴다.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하며, 제시된 보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에 체크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 차별을 당했지만 별다른 피해나 불이익이 없었다고 주관적으로 생각되면 '㉠ 없었음'에 응답하도록 한다.
- 문17-1-1번은 차별의 유형/종류를 묻는 것이고 문18번은 차별의 결과로 받은 피해 또는 불이익을 묻는 것이다.

19

귀하는 13, 14, 17 에서 하나라도 '있다'에 응답했습니까?

① 그렇지 않다 → 20 로 이동

① 그렇다

19-1

귀하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을 우선순위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응답하셨던 지난 1년 동안의 인권침해나 차별경험에 따라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가족 또는 친인척	① 배우자 ②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③ (손)자녀/배우자의 (손)자녀 ④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가족 외의 친인척(손윗사람) ⑥ 기타(적을 것 : _____)
(2)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	⑦ 직장 상사나 상급자 ⑧ 이웃 또는 동호회, 동창회 등 내가 속한 집단 사람 ⑨ 학교 선후배, 친구, 동료 ⑩ 학원 강사, 학교 교사, 대학교수 ⑪ 기타(적을 것 : _____)
(3)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⑫ 공권력을 가진 사람(경찰, 검찰, 공무원 등) ⑬ 집 또는 방, 상가의 소유주 ⑭ 고객(소비자/손님) ⑮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 ⑯ 거래처 사람(원청·하청 관계 등) ⑰ 면접관, 채용관 ⑱ 길에서 만난 행인 ⑲ 온라인상으로 만난 사람 ⑳ 기타(적을 것 : _____)
(4) 상황이나 환경	㉑ 자연환경(미세먼지, 폭염 등) ㉒ 주변 생활환경(소음,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 ㉓ 기타(적을 것 : _____)

※ 19-1 의 1순위와 2순위 응답이 모두 ㉑~㉓일 경우는 19-2 로 이동

- 문13번, 문14번, 문17번의 인권침해 경험 또는 차별 경험에 모두 해당되는 질문이다. 이 문항의 응답 대상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모든 응답자에게 먼저 문13번, 문14번, 문17번에 인권침해 또는 차별 경험이 있었는지를 질문한다.

- 문13번, 문14번, 문17번에서 모두 어떠한 인권침해와 차별도 겪지 않았으면 문19번에서 '③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후 문20번으로 건너뛴다.
- 인권침해 또는 차별 경험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 경우에 문19-1번에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의 가해자를 묻는다.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많이 한 순서대로 각각 숫자로 기록한다. 제시된 보기
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에 체크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 19-1 의 1순위와 2순위 응답이 모두 ㉑~㉓일 경우는 ➡ 19-2 로 이동

19-1-1

지난 1년간 귀하에게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③ 잘 모름
(2) 연령대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⑥ 잘 모름

- 문19-1-1번에서 나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별과 연령대를 체크한다. 성별, 연령대에 대해 알지 못하면 ③ 잘 모름에 체크한다. 순위에 상관없이 가해자가 사람인 경우에만 체크하고,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가해자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라면 체크하지 않는다.

19-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가해자(사람,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 ②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③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 ④ 공공기관에(교육기관 포함) 도움을 요청했다 → 19-2-1 로 이동
- ⑤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19-3-1 로 이동
- ⑥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 19-4 로 이동

→ 20 으로 이동

19-2-1

귀하가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어디입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국가인권위원회
- ② 대통령실
- ③ 검찰, 경찰
- ④ 지방자치단체
- ⑤ 교육기관(학교 인권센터, 위클래스 포함)
- ⑥ 기타 공공기관

19-2-2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19-2-1 , 19-2-2 응답 후 → 20 으로 이동

19-3-1

도움을 요청한 민간단체/전문가는 무엇입니까?(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시민사회단체
- ② 법률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
- ③ 언론기관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19-3-2

도움을 요청한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19-3-1 , 19-3-2 응답 후 → 20 으로 이동

19-4

귀하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 ②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③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 ④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가해자 처벌 어려움 등)
- 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 ⑥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 ⑦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19-4 응답 후 → 20 으로 이동

- 문19-2번은 문19번에 연결된 질문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선택한다.
- 문19-2번에서 ①, ②, ③으로만 응답하면 문20번으로 건너뛴다.
- 문19-2번에서 (④ 공공기관(교육기관 포함)에 도움을 요청했다에 응답한 경우) 문19-2-1로 가서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한다. 또한 문19-2-2로 가서 공공기관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응답한다.
- 문19-2번에서 (⑤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에 응답한 경우) 문19-3-1로 가서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한다. 또한 문19-3-2로 가서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응답한다.
- 문19-2번에서 (⑥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에 응답한 경우) 문19-4로 가서 1개의 응답에 체크한다.



III 인권 관련 의견

- 인권 쟁점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어느 쪽 의견에 가까운지를 조사한다.
- 화살표의 양 끝으로 갈수록 그 의견에 강하게 동조한다는 의미이다.
즉 ①과 ④는 매우 그렇다, ②와 ③은 대체로 그렇다는 뜻이다.

20

귀하는 다음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 사형제도는

유지해야
한다폐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0-2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0-3 국가정보기관이 인터넷, 스마트폰의 개인 간 대화 내용과 통신 기록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0-4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제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0-5 한국에서 난민은

되도록
받아들여야
한다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 문20-1번: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사례가 없으나, 현행법상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이 문항은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존치에 관한 의견을 묻기 위한 문항이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생명권의 존엄성,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처형 가능성 등을

논거로 제시한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흉악 범죄에 대한 응보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주장하고 있다.

- 문20-2번: 범죄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문항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문항이다. 대한민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 문20-3번: 이 문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정보기관이 개인의 카카오톡, 밴드 등 메신저 대화 내용을 감청, 감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문항이다. 이는 국가안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상충된 가치 사이의 균형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국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등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 문20-4번: 시위,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도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문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 **시위:** 다른 말로 데모라고 하며,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집회:** 일반적으로 옥외집회를 말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이다.

- 문20-5번: 난민은 자신의 국가에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전쟁, 내전, 테러 등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상태나 극도의 빈곤, 기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본국에서 살 수 없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고,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 인정 절차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 후 심사를 받게 된다.

20-6	성평등을 위해 여성에게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고 불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당제, 가산점 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찬성한다 ← →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0-7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 →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0-8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다 ← → 필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20-9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 ← → 침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 20-6번, 20-7번: 여성,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는 우리사회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적극적 우대조치라고 한다. 여성채용목표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라든지, 또는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인 적극적 우대조치 사례이다.
- 20-8번, 20-9번: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이며, 각 지자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범으로 그 효력이 지자체 내에 한정된다.

-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례이다. 한국 사회에서 학생 인권 문제가 대두되며,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통과되었다.
- **교권:** 교권(敎權)은 교사의 지위와 권위 혹은 권리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직 수행을 위한 교사의 수업, 학생지도 등에 관한 권한 등을 포괄한다.

21

귀하는 기후위기(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증가, 생물다양성 축소, 해수면 상승 등)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한 것으로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표시한다.
- 지구온난화 : 지구 표면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상 현상을 말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과 북극의 빙하, 알프스와 히말라야 등의 산악 빙하가 녹아내릴 것이며,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
- 생물다양성 축소: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종과 생태계의 다양성 혹은 생물 유전자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

21-1

귀하는 기후위기(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증가, 생물다양성 축소, 해수면 상승 등)가 심각해진다면 개인 삶에 주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두에게 똑같이 심각하다
- ②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하다
- ③ 기후위기에 따른 심각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 기후위기가 심각해진다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21-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폭염, 폭우, 폭설, 태풍 등)에 취약한 노인, 영유아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 등 취약 지역 거주자 등을 말합니다.



-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22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를 체크할 때, 관련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나의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3)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다	①	②	③	④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22번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방법,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문서이다.
- 22번의 2) 신상정보는 한 사람의 몸이나 처신, 또는 그의 주변에 관한 일이나 형편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22-1

개인의 금융, 건강 관련 정보를 가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므로 찬성한다	←	→	개인정보 유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 특정 기관을 지정해서 은행이나 금융사, 또는 병원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정보를 모아서 가공한 후에 건강관리, 투자컨설팅, 자산관리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21년 말부터 주요 금융사를 중심으로 시범 서비스에 돌입하였다.

23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 아동·청소년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연령대를 의미한다.

- 23번의 3) 초·중·고등교육과정 사회, 도덕 교과에 인권, 기본권, 인권존중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교과 학습주제로 '인권교육', '인권과 헌법', '인권 보장과 헌법' 등이 있다.

23-1

현재 한국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는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23-2

현재 한국 사회의 노인학대 문제는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 문23-1번, 23-2번: 현재 한국 사회의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이다.

- 23-1)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3-2)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4

귀하의 가족, 이웃, 친구 중에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1) 장애인	①	②
2) 결혼이주민	①	②
3) 이주노동자	①	②
4) 북한이탈주민	①	②
5) 성소수자	①	②
6) 난민	①	②

- 가족, 이웃, 친구 등 가깝게 지내거나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서 보기에 제시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국제결혼의 사유나 한국의 기업에 취업을 위해 이주해온 외국인들이 아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취약계층이라고 여겨지는 대상을 의미한다. 결혼이주민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해 온 외국인들,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기피되는 힘든 노동을 대신 하기 위해 이주해 온 외국인을 말한다.

24-1

다음의 사람이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1) 여성	①	②	③	④
2) 청년	①	②	③	④
3) 노인	①	②	③	④
4) 장애인	①	②	③	④
5) 결혼이주민	①	②	③	④
6) 이주노동자	①	②	③	④
7)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8) 성소수자	①	②	③	④

- 보기에 제시된 사람들이 나의 정치적 대표자(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 청년: 20대 또는 30대의 연령에 있는 사람
- 노인: 65세 이상의 연령에 있는 사람

2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목격한 것도 모두 포함합니다)

• 혐오 표현이란

성별, 장애, 나이, 지역,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 무시, 모욕, 위협, 차별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말이나 비하 표현, 욕설을 의미합니다.

-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 26 으로 이동

25-1 귀하가 혐오 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 | |
|-------------------------------|-------------------------------------|
| ① 친구/가족/지인 | ②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 |
| ③ 메신저 서비스(카카오톡, 밴드, 라인, 위챗 등) | ④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
| ⑤ TV/라디오 | ⑥ 인터넷 방송(유튜브, 아프리카TV 등) |
| ⑦ 캠페인, 거리 집회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25-2 혐오 표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난민 삭제)

- | | |
|--------------------|-----------------------|
| ① 여성 | ② 남성 |
| ③ 아동 · 청소년 | ④ 노인 |
| ⑤ 장애인 | ⑥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
| ⑦ 북한이탈주민 | ⑧ 난민 |
| ⑨ 성소수자 | ⑩ 특정 종교인 |
| ⑪ 노숙인 | ⑫ 특정 지역 출신인 |
| ⑬ 정치인 | ⑭ 연예인 |
| ⑮ 기타(적을 것 : _____) | |

25-3 (25-2에 3개 이상 선택하였을 경우) 25-2 에서 선택하신 혐오 표현 대상 중 혐오 표현의 내용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시요.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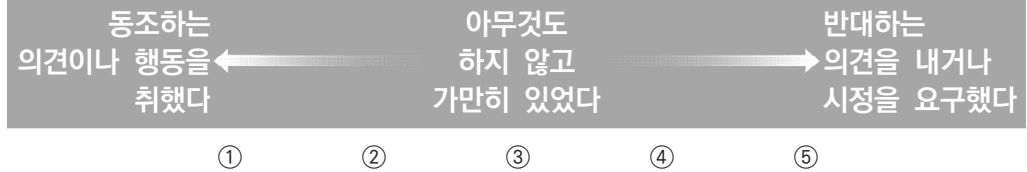
2순위

○ 혐오표현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④ 전혀 없다'에 응답한 경우 곧바로 문26번으로 건너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아래의 질문들에 응답하도록 한다. 인터넷 등의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일상 생활에서의 혐오 표현도 해당된다.

- 직·간접 경험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터넷 댓글에서 혐오 표현 글을 읽은 경우도 해당된다.
- 문25-1번, 문25-2번은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응답을 체크하도록 한다.
- 문25-3번의 경우 문25-2에 3개 이상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응답하며, 응답한 혐오표현의 대상 중 그 내용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하도록 한다.

25-4 귀하는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 문25-4 화살표의 양 끝으로 갈수록 그 의견에 강하게 동조한다는 의미이며, 가운데 ③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의미이다.

26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는 심각하지 않은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 문26번 화살표의 양 끝으로 갈수록 그 의견에 강하게 동조한다는 의미이다.

27 귀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적 규제란 법률에 의거하여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법원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분 등을 포함한다.
- 문27번 화살표의 양 끝으로 갈수록 그 의견에 강하게 동조한다는 의미이다.



IV 인권 교육 및 개선

- 응답자가 인권침해/차별의 가해자가 되지 않거나, 타인으로부터 인권침해/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함
- 인권교육 경험 및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28

귀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 | |
|-----------|----------|
| ① 매우 잘 안다 | ② 아는 편이다 |
| ③ 모르는 편이다 | ④ 전혀 모른다 |

○ 응답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응답한다.

29

귀하는 본인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 | |
|-----------|----------|
| ① 매우 잘 안다 | ② 아는 편이다 |
| ③ 모르는 편이다 | ④ 전혀 모른다 |

○ 응답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응답한다.

30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교육이란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한 교육을 포함합니다.
(예시 : 성차별 및 성희롱 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 등)

① 없다 → 31 로 이동

① 있다

30-1

귀하는 어디에서 인권교육을 받았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 | |
|--------------------|-----------------|
| ① 국가인권위원회 | ②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
| ③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 | ④ 시민사회단체 |
| ⑤ 민간기업·사업체 | ⑥ 사회복지 관련 단체 |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

30-2

귀하는 인권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 | |
|---------------------|------------------|
| ① 내부 강사/교사에 의한 집합교육 | ②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 ③ 온라인(사이버)교육 | ④ 시청각 교육 |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 |

30-3

귀하가 받은 인권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에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① 있다'는 응답의 경우 문30-1번~문30-3번으로 가서 응답하도록 한다.
- 문30-1번, 문30-2번은 해당되는 것을 모두 체크하고 제시된 보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에 체크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 문30-3번은 1개를 체크하도록 한다.
-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①없다'에 응답한 경우 문31번으로 건너뛴다.

- 시민사회단체: 자유롭고 평등한 보통의 개인들이 사회 개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서 만든 모임이나 조직을 말한다.

31

귀하는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필요 없는 편이다 ④ 전혀 필요 없다

○ 인권교육이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없는지에 대해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응답하도록 한다.

32

귀하는 다음 중 인권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할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② 검찰/경찰/법원
③ 국회/지방의회
④ 군대
⑤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
⑥ 대학교
⑦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⑧ 기업 및 사업자
⑨ 시민사회단체
⑩ 언론 등 대중매체
⑪ 복지시설(요양원, 집단거주시설 등)
⑫ 종교단체
⑬ 기타(적을 것 : _____)

○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숫자로 2개를 적도록 한다.

○ 제시된 보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에 체크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 공공기관: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집단거주시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거주시설, 보육원, 교도소 등이 대표적인 시설이다.

33

귀하는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성평등
- ② 장애인 인권
- ③ 이주민 인권
- ④ 아동/청소년 인권
- ⑤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 ⑥ 노동 인권
- ⑦ 노인 인권
- ⑧ 성소수자 인권
- ⑨ 북한이탈주민 인권
- ⑩ 혐오/차별 예방
- ⑪ 정보인권
- ⑫ 기타(적을 것 : _____)

- 인권교육이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나 주제에 관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숫자로 2개를 적도록 한다.
- 제시된 보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에 체크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 정보인권이란 정보통신의 안전성과 비밀보장, 정보제공권(혹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권리), 알 권리, 개인정보의 처분(처리 혹은 가공, 공개)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3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1)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①	②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①	②
3)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①	②
4)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①	②
5)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①	②
6)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①	②
7)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①	②

- 보기로 제시된 활동은 인권침해/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활동만으로 제한한다. 단순한 조언이나 상담, 자원(봉사)활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35

귀하는 인권 보호와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①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 | ②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 |
| ③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응 | ④ 인권교육 강화 |
| ⑤ 인권 캠페인, 홍보 활동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숫자로 기록하며, 2개를 적도록 한다.

36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다음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 우리나라의 정부(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포함)가 인권보호와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법과 제도를 제대로 준비해 놓고 있는지,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 시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응답하도록 한다.

37

귀하는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어느 집단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정부 등 공공기관 | ② 시민사회단체 |
| ③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 | ④ 언론 |
| ⑤ 교육기관 | ⑥ 국제기구 |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

- 제시된 보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에 체크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V 개인 및 가구 관련 사항

배문1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미혼/비혼
- ②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
- ③ 사별
- ④ 이혼(별거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조사

○ 혼인상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연령과 관련이 많으므로 반드시 연령과 비교하여 검토

- ① 미혼/비혼: 한 번도 혼인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해당
- ② 배우자 있음: 혼인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동거)도 포함
- ③ 사별: 혼인은 하였으나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망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대로 기입
- ④ 이혼: 혼인 후 배우자와 헤어져서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도 포함

예) 이혼 후 다시 재혼한 경우 '② 배우자 있음'

재혼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 '③ 사별'

배문2 귀하의 정규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① 안 받았음

→ 배문3으로 이동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 대학(교)(4년제 미만)
- ⑤ 대학교(4년제 이상)
- ⑥ 대학원 석사 과정
- ⑦ 대학원 박사 과정

- ① 졸업
- ② 재학
- ③ 수료
- ④ 휴학
- ⑤ 중퇴

○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정규교육(각종 특수학교 포함)을 의미

- 현재 재학 중인 경우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두 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최고 학력을 기준으로 조사
- 교육정도
 - 대학교 졸업이후, 다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 「4. 대학(교)(4년제 미만)」 → 「2. 재학」에 표시
 - 대학교(4년제 이상)를 졸업 후 대학(교)(4년제 미만)을 졸업한 경우 대학교 졸업으로 표시
 - 과거 학제인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하여 기입
 - 과거 5년제 중학교 졸업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표시
 - 공민학교는 초등학교,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에 해당
 - 석·박사 통합과정 중인 경우는 이수학점이 24학점 이하이면 「6. 대학원 석사 과정」재학으로, 그 이외는 「7. 대학원 박사과정」재학으로 조사
- ① 졸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검정고시로 합격한 경우도 해당
- ② 재학: 검정고시 준비생은 포함되지 않음
- ③ 수료: 학교를 다니는 동안 졸업 이수 학점을 다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이나 졸업논문 등 졸업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졸업 이수 학점을 다 이수하면 수료가 되고 졸업 조건까지 충족되면 졸업에 해당함

배문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종교 없음

.....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가톨릭)

④ 원불교

⑤ 유교

⑥ 천도교

⑦ 기타 종교(적을 것 : _____)

- 종교는 교회, 성당, 절 등에 다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종교를 응답하도록 함

배문4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일했음'과 '일시휴직'

- 일했음 : ①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했거나
②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 등에서 보수 없이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
- 일시휴직 : 자신이나 가족의 병, 사고, 휴가(연가), 교육, 노사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으나 복귀가 가능한 경우

① 일했음(일시 휴직 포함)



② 일하지 않았음

➡ 배문5로 이동

○ 일주일 간 일자리 보유 여부

① 일했음: 지난 일주일동안에 1시간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조사대상 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① 일했음'으로 조사하지만, 가족이 아닌 가구원의 일을 돕거나,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일을 돕는 것은 '② 일하지 않았음'으로 조사
- 일시 휴직자: 직장 또는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에 자신이나 가족의 병, 사고, 휴가(연가), 교육, 노사분규, 원료부족 및 일기불순에 따른 조업중단 등으로 직장 또는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일시 휴직)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일시 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직장(사업장)에 복귀가 가능해야 함
- 유급 일시 휴직자는 모두 '① 일했음'으로 조사
- 방학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는 교사·교수, 육아·출산 휴직 중인 자, 병가 중인 자, 집안 경조사, 가족의 병 및 사고 등으로 휴직 중인 자, 파업 참가자 등의 무급 일시 휴직자는 복귀가 확실하고 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만 '① 일했음'으로 조사

② 일하지 않았음

- 1시간 이상의 임금을 받았더라도 1시간 미만을 일하였다면 '② 일하지 않았음'으로 조사
- 가사노동의 경우 18시간 이상 일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보수가 없었다면 '② 일하지 않았음'으로 조사

배문4-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종사자 |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군인 |

○ 통계청 직업분류표 대분류를 참조

○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① 근로시간 ② 수입 ③ 최근 직업의 순으로 결정한다.

배문4-2 직장(일)에서 귀하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에 따라 구분합니다
(상용 : 1년 이상, 임시 :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 : 1개월 미만).

① 임금근로자

-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④ 무급 가족 종사자
⑤ 기타 종사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① 임금근로자: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임시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 대가를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로 받고 있는 사람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

-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
- ④ 무급가족종사자: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이상)일한 자
 - 동일 가구 내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할 경우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니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아서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기사(레미콘 차량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배문5

귀하는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국가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개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경제 성장
- ② 국가 안보 강화
- ③ 참여와 권리 보장
- ④ 환경 및 생태계 보호

- 앞으로 국가가 중점을 두고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응답하도록 한다.
-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숫자로 기록하며, 2개를 적도록 한다.

배문6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전혀 만족하지 않을 경우 0, 매우 만족할 경우 10으로, 0~10 사이에서 요즘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응답한다.

배문7

귀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 ②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 ③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

○ 공동체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응답한다.

배문8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치적 쟁점, 정치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질문한다. 문화적, 일상적 성향이나 개인의 기질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이 페이지는 가구주만 응답합니다.

배문9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 | | |
|-------------|--------------------|
|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 ③ 연립/다세대 주택 | ④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
| ⑤ 오피스텔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 ① 단독주택: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하지만,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같이 여러 가구가 생활할 수는 있으나 가구마다 개별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② 아파트: 하나의 건물 내에 다수의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분리되고 독립된 주택을 말한다.
- ③ 연립주택: 하나의 건물에 두 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도록 연립하여 건축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다.
- ④ 비주거용건물 내 주택: 영업 또는 기타 비거주 목적인 건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었거나 개조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 ⑤ 오피스텔: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을 말한다.
- ⑥ 기타: 1)~5)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사항을 자세히 기입한다.

배문10

지난 1년 동안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세금 공제 전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기재해 주십시오.)

-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 ⑦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⑧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 ⑨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⑩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 ⑪ 1,000만원 이상 | |

○ 개인소득이 아니라 전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친 소득을 의미한다. 연간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한다.

-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납부 전 소득
- 기초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일정한 금전의 정기적 수령은 소득 있음으로 표기
- 주부, 학생, 노인층의 경우 용돈이 주 수입원이라면 소득 있음으로 표기

※ 소득의 범위 : 경상소득(③) + 비경상소득(④)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내용
소득(①)	경상소득(③)	근로소득	가주주, 배우자, 가구원의 급여, 상여금 등
		사업소득	사업경영을 통해 얻은 판매수입 중에서 가계생활을 위해 가계로 전입된 소득
		재산소득	재산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 재산소득
		이전소득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이전에 의한 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가구간 이전, 할 인혜택, 기타 이전소득, 사회적 현물이전(정부 및 비영리단체가 가 계지출에서 특정한 목적 (구체적 용도)에 지출의 보전 또는 직접 현 물을 제공하는 상품)
	비경상소득(④)	-	일시적이며,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수입(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 비경상소득)
기타 수입(②)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	저축 및 보험 탄 금액, 계 탄 금액, 보증금 회수,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기타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부채증가로 인한 소득	-	부동산 담보 대출, 기타 빌린 돈
	자산이전	-	자산이전 수입

라. 조사표 내용 검토

- 지시문에 따라 기입되어야 할 문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단일선택 문항인데, 복수응답 한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 순위로 응답하는 경우 ①보기항목에 체크하지 않고 순위별 번호로 기입하였는지, ②번호순이 아닌 우선순위로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 이동 문항을 누락없이 조사하였는지 확인한다.
- 조사표 일련번호가 결번이나 중복 없이 차례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숫자를 기입하는 문항의 경우, 단위에 맞게 조사되었는지 어떤 숫자인지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보기 중 ‘기타’에 표시된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입된 내용이 다른 보기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포함될 경우, 수정하여 해당 보기에 표시하도록 한다.
- 응답내용이 변경된 경우 확실하게 수정하고, 마지막 수정된 값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하여 자료 입력 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한다.
- 지정된 항목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없는 항목은 사선 처리한다.
- 조사항목 간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2024년도 인권의식실태조사 지침서

부록

표준직업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관리자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111 의회의원 · 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112 기업고위임원
	12 행정 · 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121 행정 및 경영지원관리자 122 마케팅 및 광고 · 홍보관리자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131 연구 · 교육 및 법률관련관리자 132 보험 및 금융관리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관련관리자 134 문화 · 예술관련관리자 135 정보통신관련관리자 139 기타전문서비스관리자
	14 건설 ·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41 건설 · 전기 및 생산관련관리자 149 기타건설 · 전기 및 생산관련관리자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151 판매 및 운송관리자 152 고객서비스관리자 153 환경 · 청소 및 경비관련관리자 159 기타판매 및 고객서비스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1 생명 및 자연과학관련전문가 212 인문 및 사회과학전문가 213 생명 및 자연과학관련시험원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1 컴퓨터하드웨어 및 통신공학전문가 222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전문가 223 데이터 및 네트워크관련전문가 224 정보시스템 및 웹운영자 225 통신 및 방송송출장비기사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 건축 · 토목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232 화학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 · 재료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234 전기 · 전자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235 기계 · 로봇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236 소방 · 방재기술자 및 안전관리원 237 환경공학 · 가스 · 에너지기술자 및 협원 238 항공기 · 선박기관사 및 관제사 239 기타공학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4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 의료진료전문가 242 약사및한약사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 · 재활사 및 의료기사 246 보건의료관련종사자 247 사회복지관련종사자 248 종교관련종사자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1 대학교수및강사 252 학교교사 253 유치원교사 254 문리 · 기술및예능강사 259 기타교육전문가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1 법률전문가 262 행정전문가
	27 경영 · 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1 인사 및 경영전문가 272 금융 및 보험전문가 273 상품기획 · 홍보 및 조사전문가 274 감정 · 기술영업 및 중개관련종사자
	28 문화 · 예술 ·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1 작가 및 언론관련전문가 282 학예사 ·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283 연극 · 영화 및 영상전문가 284 시각 및 공연예술가 285 디자이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8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관련전문가 287 식문화관련전문가 288 문화 · 예술관련기획자 및 매니저
3 사무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11 행정사무원 312 경영관련사무원 313 회계 및 경리사무원 314 비서 및 사무보조원
	32 금융 사무직	320 금융사무종사자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30 법률 및 감사사무종사자
	39 상담 · 안내 · 통계 및 기타 사무직	391 통계관련사무원 392 여행 · 안내 및 접수사무원 399 고객상담 및 기타사무원
4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 · 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11 경찰 · 소방 및 교통관련종사자 412 경호 및 보안관련종사자
	42 돌봄 · 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421 돌봄 및 보건서비스종사자 422 미용관련서비스종사자 423 혼례 및 장례종사자 429 기타돌봄 · 보건 및 개인생활서비스종사자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31 운송서비스종사자 432 여가서비스종사자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41 조리사 442 식음료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51 영업직	510 영업종사자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21 매장판매종사자 522 상품대여종사자
	53 통신 및 방문 · 노점 판매 관련직	531 통신관련판매직 532 방문및노점판매관련직
6 농림 · 어업숙련종사자	61 농 · 축산 숙련직	611 작물재배종사자 612 원예 및 조경종사자 613 축산 및 사육관련종사자
	62 임업 숙련직	620 임업관련종사자
	63 어업 숙련직	630 어업관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7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710 식품가공관련기능종사자
	72 섬유 · 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1 섬유 및 가죽관련기능종사자 722 의복제조관련기능종사자
	73 목재 · 가구 · 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0 목재 · 가구 · 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종사자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741 금형 · 주조 및 단조원 742 제관원 및 판금원 743 용접원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1 자동차정비원 752 운송장비정비원 753 기계장비설치 및 정비원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1 전기 · 전자기기설치 및 수리원 762 전기공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71 정보통신기기설치 및 수리원 772 방송 · 통신장비관련 설치 및 수리원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1 건설구조관련기능종사자 782 건설관련기능종사자 783 건축마감관련기능종사자 784 채굴 및 토목관련기능종사자
	79 기타 기능 관련직	791 공예 및 귀금속세공원 792 배관공 799 기타기능관련종사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8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811 식품가공관련기계조작원 812 음료제조관련기계조작원 819 기타식품가공관련기계조작원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21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 822 직물 · 신발관련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23 세탁관련기계조작원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831 석유 및 화학물가공장치조작원 832 화학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생산기조작원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41 주조 및 금속가공관련기계조작원 842 도장 및 도금기조작원 843 비금속제품생산기조작원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851 금속 공작 기계 조작원 852 냉난방관련설비조작원 853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봇조작원 854 운송차량 및 기계관련조립원 855 금속기계부품조립원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861 발전 및 배전장치조작원 862 전기 및 전자설비조작원 863 전기 · 전자부품 및 제품제조장치조작원 864 전기 · 전자부품 및 제품조립원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71 철도 및 전동차기관사 872 철도운송관련종사자 873 자동차운전원 874 물품이동장비조작원 875 건설 및 채굴기계운전원 876 선박승무원 및 관련종사자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881 상하수도처리장치조작원 882 재활용처리 및 소각로조작원
	89 목재 · 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91 목재 및 종이관련기계조작원 892 인쇄 및 사진현상관련 기계조작원 899 기타 기계조작원
9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0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자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1 하역 및 적재단순종사자 922 배달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0 제조관련 단순종사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42 건물관리원 및 검표원
	95 가사 ·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51 가사 및 육아도우미 952 음식관련단순종사자 953 판매관련단순종사자
	99 농림 ·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1 농림 · 어업관련단순종사자 992 계기 · 자판기및주차관리종사자 999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종사자
A 군인	A0 군인	A01 장교
		A02 부사관
		A09 기타군인



교육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부도 그렇지만 교육도 들을 땐 이해가는 데 막상 조사하려면
어려우시죠?

그럴 때마다 지침서를 확인 해 주세요.

지침서에 없는 특이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지역별 실사 담당자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면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
